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19 선고 2020가단228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 주식회사

2. D

3. E

변론 종결2020. 6. 5.

판결 선고2020. 6. 19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,034,472원 및 그중 8,977,381원에 대한 2019. 10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별지 "청구원인"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.

판사강영훈

별지